

오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정 1991년 4월 8일 조례 제245호
개정 2001년 10월 31일 조례 제687호 부칙
개정 2008년 1월 15일 조례 제949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문개정에 따른
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1년 12월 14일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2016년 6월 2일 조례 제1494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2년 1월 13일 조례 제1982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오산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제2조(범위) ①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13>

1.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부시장
2.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보조기관 중 국·과장급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4. 제3호의 소속 행정기관 중 제2호의 국·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나 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등이 대신 출석·답변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1.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시 소속 하부행정 기관의 장
2.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원·본부장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본부장

오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부칙 〈2016. 6. 2 조례 제1494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 13 조례 제1982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